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762호

2025년 제12회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 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연번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예정 부서	담당 예정 직무
1	**법률전문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1명	2년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총괄 - 계약심사·업무협약 등 관련 법률지원 총괄 - 시정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 총괄 - 행정·민사·국가소송 수행 및 총괄 (소송방침수립, 답변서 등 서면 작성, 변론기일 등 소송수행 총괄) - 현안 사업 관련 현장 법률지원 총괄 등
2	**노무전문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노무자문 - 시정 관련 분쟁발생 시 노무지원 - 교섭 지원체계 운영, 관련 법률 검토 및 대응 자문 - 노사 소송수행 관련 업무 등 - 시 산하기관 노동관련 소통 및 현안 파악,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노동 현안 업무
3	**지방세송무 전문요원**	임기제지방 세무주사	1명	2년	재무국 세제과	- 시세 민사소송 총괄 및 수행 - 시세 행정소송 수행 - 시세 소송 심사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업무 수행 (의견서 작성, 심판관회의 참석, 의견진술 등) - 자치구 시세 소송 지도·감독 및 소송수행자 대상 송무교육

연번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예정 부서	담당 예정 직무
4	**설계요원**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1명	2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하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과제발굴 및 추진 - 하수관로 조사자료의 관리방안과 유효 활용방안 도출 - 도심내 개발사업이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비용산정 연구
5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1명	3년 (주 35시간)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직권에 의한 감사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중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청원처리 및 청원심의회 운영 등
6	**지하안전평가 이행점검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2년 (주 35시간)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 지하안전계측 데이터 해석 및 연구 - 지하안전 관련 구조 안전성 평가 - 지하안전평가 이행실태 점검 총괄

※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 불가)

※ 변호사 채용 분야의 경우, 변호사 실무수습(6개월)이 가능한 지 여부는 채용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

2. 법령 근거

-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ㅇ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3. 응시 자격요건

○ 공통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최종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ㅇ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 응시자격 요건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5조(시민감사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람
2. 제8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8조에 의하여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다만, 법 제184조, 제185조 및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함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선발 직무분야 응시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최종 예정일)

연번	구 분	응시 자격요건
1	**법률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5급)	1.「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 **우대요건** -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무 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무법인, 개인변호사업, 기업체 법무 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
2	**노무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	1.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자 ◈ **우대요건** -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노무 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무법인, 개인노무사업, 기업체 노무 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지방세송무전문요원** (임기제지방세무주사, 6급)	1.「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 단,「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공고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함 ◈ **우대요건**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담당 직무와 관련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설계요원** (임기제지방시설주사,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토목공학, 환경공학 등 토목분야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상하수도 또는 수자원개발분야 실무경력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상하수도 또는 수자원개발분야에 종사한 자

연번	구 분	응시 자격요건
5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주35시간)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시민사회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 단,「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함 **◈ 우대 요건**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6	**지하안전평가이행점검요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주35시간)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수행에 지장 없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자원공학과 등 (토질・지질・지반・구조)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하안전 관련 연구경력 및 기술개발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상 경력 (전문분야: 토질・지질, 구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상 경력 (전문분야: 토질・지질,토목구조,토목시공,건축시공,건설안전) - 지하안전법 상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실무경력 **◈ 우대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 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소지자 - 토목, 건설시공 분야 2년이상 감리 혹은 건설사업관리(CM) 업무 경력자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응시하거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상기 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함.**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주당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주 35시간 환산)		67,307 (58,893)
6급(상당) (주 35시간 환산)	83,677 (73,217)	55,756 (48,786)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5. 시험 일정 및 시험 방법

○ **응시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2025. 12. 26.(금) ~ 12. 30.(화), 3일간
- 접수 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권장 / 응시번호 문자 개별 통보
  -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방문 접수 시간: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 우편 접수: (우편번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
  -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창의관 2층

※ 응시 원서 양식(응시 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 마감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 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 접수,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2025. 12. 19.(금)	서울시 누리집 등
응시 원서 접수	2025. 12. 26.(금) ~ 12. 30.(화)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 16.(금)	서울시 누리집 등
면접시험	2026. 1. 26.(월) ~ 1. 28.(수) (예정)	서울시 인재개발원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6. 1. 30.(금) (예정)	서울시 누리집 등
최종 합격자 발표	※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 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인 경우),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공직관, 인성, 발전 가능성, 전문성 및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서울시 누리집 등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 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 서류

가. 공통 사항(필수 사항)

○ 응시 원서(첨부 1) 1부

- 응시 원서에는 응시 수수료(5급·가급 10,000원/6급·나급 7,000원)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매출전표)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납부확인서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 원서에 부착하여야 함.(판매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방문 전 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 원서는 접수 불가

※ 온라인 구입은 ETAX홈(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 수수료)에 따라 하면 됨

※ 원서 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음

※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수입증지 구입 안내 ◈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 방문: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층)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 전 발행여부 확인)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 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제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맹점용) 및 부착
     ▸구청 재무과: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메뉴에서 구매 가능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5천 원, 7천 원, 1만 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 메뉴위치: [ETAX(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 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 메뉴위치: [ETAX(etax.seoul.go.kr) 홈 > 납부(영수증)확인 > 신고납부 확인 납세번호 클릭 > 하단 "납부확인서"(영수증×) 인쇄]

○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 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응시 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 직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 8)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 민간 부문 업무 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 임용 전 민간 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 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 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②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 서류* ①, ②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관련 문의: 국세청 (☎126)

나. 개별 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ㅇ 동일 계통 학과 증명서(첨부 7) 1부
- ㅇ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8) 1부
- ㅇ 응시 자격 및 우대 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 ㅇ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7. 기타(유의) 사항

- ㅇ 응시 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ㅇ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ㅇ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ㅇ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ㅇ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ㅇ 응시 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를 응시자에게 공개합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

-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누리집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02-3488-2347)
  -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연번	임용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1	법률전문요원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02-2133-6713
2	노무전문요원		
3	지방세송무전문요원	재무국 세제과	02-2133-3353
4	설계요원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02-2133-3783~4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02-2133-3123
6	지하안전평가이행점검요원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02-2133-0435

붙임 1. 분야별 직무기술서 각 1부.
2. 제출서류 서식 1부(따로 붙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법률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주요업무	○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총괄 ○ 계약심사·업무협약 등 관련 법률지원 총괄 ○ 시정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 총괄 ○ 행정·민사·국가소송 수행 및 총괄 (소송방침수립, 답변서 등 서면 작성, 변론기일 등 소송수행 총괄) ○ 현안 사업 관련 현장 법률지원 총괄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법적 전문성

필요지식	○ 법률 전문지식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1.「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우대요건		○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무 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무법인, 개인변호사업, 기업체 법무 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노무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주요업무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노무자문 ○ 시정 관련 분쟁발생 시 노무지원 – 교섭 지원체계 운영, 관련 법률 검토 및 대응 자문 ○ 노사 소송수행 관련 업무 등 – 시 산하기관 노동관련 소통 및 현안 파악,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노동 현안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법적 전문성

필요지식	○ 노무 전문지식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1.「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자
우대요건		○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노무 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무법인, 개인노무사업, 기업체 노무 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지방세송무전문요원	임기제지방세무주사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주요업무	○ 시세 민사소송 총괄 및 수행 ○ 시세 행정소송 수행 ○ 시세 소송 심사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업무 수행 (의견서 작성, 심판관회의 참석, 의견진술 등) ○ 자치구 시세 소송 지도·감독 및 소송수행자 대상 송무교육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지향, 의사소통 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조세 부과·징수·조사 및 구제 업무 관련 지식 ○ 국세 및 지방세 법령 해석 능력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1.「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 단,「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공고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함
우대요건		1.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담당 직무와 관련된 근무경력이 있는 자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설계요원	임기제지방시설주사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주요업무	○ 하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과제발굴 및 추진 ○ 하수관로 조사자료의 관리방안과 유효 활용방안 도출 ○ 도심내 개발사업이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비용산정 연구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하수도 평가기준 재정립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지식 ○ 수리·수문학적 등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상이한 분야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하수도시설 계획 수립· 조정 능력 ○ 해외 선진기술의 조사· 활용성 검토 등이 가능하고, 해외 선진업체, 기관등과 협업 시 기술적인 교류가 가능한 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 경험 및 전문지식
응시자격요건 **학위·경력**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토목공학, 환경공학 등 토목분야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상하수도 또는 수자원개발분야 실무경력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상하수도 또는 수자원개발분야에 종사한 자
우대요건	○ 해당 없음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직권에 의한 감사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중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청원처리 및 청원심의회 운영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전문 지식 ○ 시민·주민·직권감사 및 공공사업 감시·평가 관련 경력 및 전문 지식 ○ 공공기관의 투명성·공정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관심 및 전문 지식 ○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높은 이해와 관련 전문 지식
응시자격요건 **경력**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 단,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함.
우대요건	1.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지하안전평가이행점검요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주요업무	○ 지하안전계측 데이터 해석 및 연구 ○ 지하안전 관련 구조 안전성 평가 ○ 지하안전평가 이행실태 점검 총괄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토질역학, 구조역학, 시공학 등 토목건축분야 전문 공학 지식 ○ 지하굴착공사장 관련 전문 기술 지식 및 현장 실무 경험
응시자격요건 **학위·경력**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수행에 지장 없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자원공학과 등 (토질·지질·지반 · 구조)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하안전 관련 연구경력 및 기술개발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상 경력 (전문분야: 토질·지질, 구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상 경력 (전문분야: 토질·지질,토목구조,토목시공,건축시공,건설안전) – 지하안전법 상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실무경력
우대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 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소지자 2. 토목, 건설시공 분야 2년이상 감리 혹은 건설사업관리(CM) 업무 경력자